

제 315회 정례회 제1차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

2023년 주요사업 보고

2022. 11. 30.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1

국가보훈대상자 지원확대로 예우 강화

복지정책과장 : 하영태 ☎2133-7310 보훈복지팀장 : 이윤식 ☎7329 담당 : 이진영, 김순미 ☎7333, 7330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사업대상

- 서울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120,797명

(2022. 10월말 기준 / 단위 : 명)

구분	총계	독립유공자 및 유족	상이군경 (전상/공상)	전몰·순직 군경유족	무공·보국 수훈자	4·19 유공자	5·18 유공자	고엽제 후유증자	특수임무 유공자	참전 유공자
총계	120,797	2,209	32,750	8,659	24,590	331	582	7,280	575	43,821
본인	78,501	2	16,896	0	9,442	163	492	7,280	405	43,821
유족	42,296	2,207	15,854	8,659	15,148	168	90	0	170	0

○ 사업내용

- 참전명예수당(참전유공자), 생활보조수당(저소득유공자), 보훈예우수당(4·19, 5·18,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명예수당(애국지사),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저소득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지급, 기념일(3·1절, 광복절 등) 위문금 지급

○ '22년 예산 : 67,653백만원

○ '22년 추진실적('22. 10월말 기준)

- 참전명예수당 등 보훈수당(5종) : 48,858명/ 55,008백만원
- 3·1절, 4·19, 5·18, 8·15 등 위문금 : 31,115명/2,376백만원

□ '23년 사업예산 : 72,989백만원

○ 예산내역

(단위 : 천원)

내역	2022년	2023년	증감
수당 등 지급	67,646,000	72,981,500	5,335,500
시설비	6,000	6,000	
사무관리비	1,000	1,000	
계	67,653,000	72,988,500	5,335,500

○ 주요 변경사항

- 생활보조수당(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인상 : 10만원→20만원
-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독립유공자(손)자녀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 70%미만) 대상 확대 : 기초연금수급자를 지급대상에 신규포함

참고자료 1

국가유공자 대상자별 지원내역

2023년 서울시 국가유공자 대상자별 예산현황

대상구분	사업명	시기	지원 금액	지원 대상 (기준인원)	'23년 예산	
독립유공자 및 유족	보훈명예수당	매월	100만원	애국지사 (4명)	48백만원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	매월	20만원	저소득 독립유공자 유족 (3,710명)	8,904백만원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매월	10만원	참전유공자 (40,000명)	48,000백만원	
4.19유공자 5.18유공자 특수입무유공자	보훈예우수당	매월	10만원	419, 518 특수입무유공자 본인 (800명)	960백만원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	매월	20만원	저소득 국가유공자·유족 (4,600명)	11,040백만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사망조의금	사망시	100만원	애국지사 사망시 유족	4백만원	
	의료비 지원	수시	본인부담금	독립유공자 및 유족 (2,200명)	1,400백만원	
	3·1절 위문금	연1회	10만원	독립유공자 및 유족 (7,500명)	750백만원	
	8·15 위문금	연1회	10만원	독립유공자 및 유족 (7,500명)	750백만원	
4.19유공자	4.19 위문금	연1회	10만원	4.19유공자 및 유족 (350명)	35백만원	
5.18유공자	5.18 위문금	연1회	10만원	5.18유공자 및 유족 (550명)	55백만원	
2인이상 전사자 유족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연1회	10만원	400명	961백만원	
중상이자(1-2급)			10만원			
용사촌 거주자			5만원			
6.25참전상이자			5만원			
저소득국가유공자			5만원			
80세 이상 고령자			5만원			
전몰군경미망인			5만원			
순직군경미망인			5만원			
중앙보훈병원			300만원			1개소
보훈단체(구지회)			30만원			225개 지회

참고자료 2

보훈수당 지원근거 및 연혁

('23년 기준)

구 분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생활보조수당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
지급 대상	6.25, 월남전 참전유공자	생존 애국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공로자 특수임무공로자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조례개정중)	독립유공자 (손)자녀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 70%미만 (조례개정중)
지원 근거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개시월	2010년 7월	2013년 4월	2017년10월	2017년 10월	2020년 3월
대상 인원	40,000명	4명	800명	4,600명	3,710명
지원 금액	월10만원	월100만원	월10만원	월20만원	월20만원
23년 예산액	48,000백만원	52백만원 (사망조의금 4백만원 포함)	960백만원	11,040백만원	8,904백만원
연령 기준	만 65세이상	-	만 65세이상	만 65세이상	-
주민등록 기준	1개월	-	1개월	1개월	-
기타 기준	-	-	-	-	*아래요건 모두 충족 ① 국가보훈처 독립유공 생활지원금 수급자 및 기초연금수급자 ② 기준중위소득70%이하
수당액 연 혁	3만원('10.7월)→ 4만원('13.4월)→ 5만원('14.1월)→ 10만원('19.1월)	10만원('13.4월) → 20만원('19.4월) → 100만원('22.1월)	5만원('17.10월)→ 10만원('19.1월)	10만원('17.10월)→ 20만원('23.1월)	-
비 고	*대상자 확대('22.1월) -제외자(상이군경, 고엽제 후유의증자) 규정 폐지 -전년 대비 월 12,743명 증가	-	*대상자 확대('22.1월) -제한규정 폐지: 보상금 및 수당 총액이 상이등 급 7급 보상금 (월496 천원) 미만인 자 -전년 대비 월 400명 증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 시 소득에서 제외 (복지부 협의 완료)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 시 소득에서 제외 (복지부 협의 완료) *대상자 확대('23.1월) - 기초연금수급자 확대 - 전년 대비 월 810명 증가

※ 서울시 보훈수당 간 중복지급 불가

2 보훈단체 지원 확대를 통한 보훈의식 제고

복지정책과장 : 하영태 ☎2133-7310 보훈복지팀장 : 이윤식 ☎7329 담당 : 이진영, 김산돌 ☎7333, 7334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 사업대상 : '23년 14개 보훈단체

구분	단체명
공법단체 (14)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6·25 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유공자회, 4·19 혁명공로자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4.19 혁명희생자유족회, 4.19민주혁명회

○ 사업내용

- 호국·보훈정신 함양·고취 활동을 위한 사업비, 단체 운영비 등 지원

○ '22년 예산 : 4,084백만원

○ '22년 추진실적('22. 10월말 기준)

- 보훈단체 사업비 및 운영비 등 지원 : 2,904백만원
 - 서울시 13개 보훈단체 운영비 492백만원, 사업비 2,362백만원, 자본보조 50백만원 교부
- 보훈단체 대표자 간담회 개최 : '22. 6. 23.(목)
 - 시장, 11개 보훈단체 서울시지부장 등 참석, 보훈정책에 대한 의견 청취, 보훈단체 활동 격려 등

□ '23년 사업예산 : 3,245백만원

○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	2023년	증감
경상사업보조	2,571,500	2,489,400	△82,100
법정운영비	492,600	645,800	153,200
자본사업보조	1,020,000	110,000	△910,000
계	4,084,100	3,245,200	△838,900

○ 주요 변경사항

- 신규 등록 공법단체(4.19혁명희생자유족회 서울시지부) 예산 신규 편성

□ 서울시 보훈단체 주요현황

연 번	구 분	주요사업	설립일자	지부장	회원수(명)
1	광복회 서울특별시지부	- 3·1/8·15 기념 위문 격려행사 - 전적지 순례 및 해외독립운동 뿌리찾기 - 바른역사아카데미 교육	2007	김정위	2,077
2	상이군경회 서울특별시지부	- 자원봉사, 자원봉사 - 국군장병위문, 독도사랑운동사업 - 청년부상제대군인 지원	1963	구본욱	20,235
3	전몰군경유족회 서울특별시지부	- 자원봉사, 전적지순례 - 호국영령추모제	1963	이장범	12,680
4	전몰군경미망인회 서울특별시지부	- 자원봉사, 전적지 순례 - 마음치료사업 - 노령회원 위로	1963	구숙정	10,742
5	무공수훈자회 서울특별시지부	- 장례지원사업, 대전현충원 참배 - 전적지순례, 장진호전투 기념사업 - 공익활동지원사업, 노령회원 위로	1989	정진성	23,023
6	고엽제전우회 서울특별시지부	- 전적지순례 및 참배 - 자원봉사 - 보훈의집 운영	1998	김진원	7,777
7	특수임무유공자회 서울특별시지부	- 특수임무전사자 합동추념식 - 전적지순례 및 노령회원 위로 - 재난구조 활동 교육 등	2008	김모연	589
8	6.25참전유공자회 서울특별시지부	- 나라사랑 안보결의대회, 참전유공자 위로 - 6.25 바로알리기 교육 - 자원봉사, 전적지순례	2008	류재식	12,825
9	월남전참전자회 서울시지부	- 모범용사 위로행사 - 전적지순례, 봉사활동 - 월남전참전 기념식	2012	김부길	36,352
10	4.19혁명공로자회 서울시지부	- 4.19혁명 정신계승 발전을 위한 기념사업	2017	김선담	328
11	5.18민주화운동 공로자회 서울시지부	- 5.18민주화운동 서울기념식 - 사적지순례	2022.3	최수동	243
12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서울시지부	- 5.18민주화운동 서울기념식 - 사적지순례	2022.3	이 남	305
13	4.19혁명희생자 유족회 서울시지부	- 4.19혁명 세미나 - 노령회원 위로행사 - 앨범제작	2022.9	이완식	75
14	4.19민주혁명회 서울시지부	- 2023년 사업계획 수립예정 - (23년 예산미편성)	2022.10	우정균	58

서울시 보훈단체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계	경상사업비	법정운영비	자본보조
총	계	3,245,200	2,489,400	645,800	110,000
광	복				
서울	서울	567,000	492,400	74,600	
특별	특별				
시	시				
지	지				
부	부				
상	이	87,600	52,000	35,600	
서울	서울				
특별	특별				
시	시				
지	지				
부	부				
전	몰	120,600	61,000	39,600	20,000
서울	서울				
특별	특별				
시	시				
지	지				
부	부				
전	몰	113,000	77,400	35,600	
서울	서울				
특별	특별				
시	시				
지	지				
부	부				
무	공	595,000	559,400	35,600	
서울	서울				
특별	특별				
시	시				
지	지				
부	부				
고	업	189,800	144,200	45,600	
서울	서울				
특별	특별				
시	시				
지	지				
부	부				
특	수	258,600	187,000	71,600	
서울	서울				
특별	특별				
시	시				
지	지				
부	부				
6.25	참	193,600	125,000	68,600	
서울	서울				
특별	특별				
시	시				
지	지				
부	부				
월	남	326,600	258,000	68,600	
서울	서울				
시	시				
지	지				
부	부				
4.19	혁	313,600	250,000	63,600	
서울	서울				
시	시				
지	지				
부	부				
5.18	민	203,600	128,000	35,600	40,000
서울	서울				
시	시				
지	지				
부	부				
5.18	민	210,600	135,000	35,600	40,000
서울	서울				
시	시				
지	지				
부	부				
4.19	혁	65,600	20,000	35,600	10,000
서울	서울				
시	시				
지	지				
부	부				
4.19	민				
서울	서울				
시	시				
지	지				
부	부				

2023년 추경 등 통해 편성 예정
 ※ '23년 예산편성 이후 지부장 선출 및 서울시지부 설립('22.10.)

3

청년 부상 제대군인 지원을 통한 건강한 사회진출 지원

복지정책과장 : 하영태 ☎2133-7310 보훈복지팀장 : 이윤식 ☎7329 담당 : 이진영 ☎7333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청년장해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만19~39세) 중 군 복무 중 장애를 입은 제대군인 및 장애로 전역 후 국가유공자 혹은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한 사람 등
- 사업내용
 -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 운영(시민청 B1('22.3.25 개소), 운영인력 4명)
 - 보훈관련 법률상담 및 행정절차 등 정보제공,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취업상담 및 일자리 정보제공 등 지원, 보훈문화 조성사업 등
- '22년 예산 : 250백만원

□ '22년 추진실적('22. 10월말 기준)

-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 원스톱상담센터 개소('22.3.25.)
 - 위치 : 서울시청 시민청 B1
 - 운영인력 : 총4명 (센터장 1, 취업상담원 1, 심리지원·회계담당 1, 변호사 1)
 - 주요사업 : 법률상담, 심리재활지원, 창업취업 연계, 유공자 신청지원 등
- 센터이용 총 965건
 - 법률상담 38, 의료자문 6, 유공등록지원 12, 보훈상담 201, 개인심리상담 115, 자조모임 69, 취업상담·연계 80, 단순문의 444
- 온·오프라인 홍보 133건
 - 외부강연 9회, 블로그 홍보 57건, 인스타그램 27건, 페이스북 35건, 유튜브 5건
- 홍보영상(4건), 리플렛, 카드뉴스 제작 등

- 「서울특별시 청년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22. 10월
- 「제1회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상담센터 심포지엄」 개최
 - 일시 및 장소 : '22. 11.30.(수) 14:00 / 전쟁기념관 1층 이병형홀
 - 주최/협력기관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시지부(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서울시 복지재단
 - 주요내용 : '22년 사업성과 및 '23년 사업계획보고, 주요인사 강연, 법률안내서 배부 등

'23년 예산 : 360백만원

-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	2023년	증감
인 건 비	82,800	207,600	124,800
운 영 비	23,000	17,000	△6,000
사 업 비	144,200	135,000	△9,200
계	250,000	359,600	109,600

- 주요 변경사항
 - '24년 서울시복지재단 대행사업으로 운영예정

통일안보지원관련 복지정책실 조례

- 1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2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3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4 서울특별시 청년 장애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 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7. 1. 5.>

1. "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5.>

② 시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경일·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수행하며,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5.>

제5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등) 시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5.>

1.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를 발간하는 경우에 시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
2. 보훈 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 시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
3.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4. 보훈의 달 및 보훈 관련 기념일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5.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제6조(단체 예산지원) 시장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 1. 5.>

1.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2. 호국·보훈정신 함양·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및 전적지 순례
3.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제7조(복지 및 생업지원) ①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원, 체육시설, 주차장, 지하철, 장묘시설, 복지시설 등에 대한 이용료를 관련 조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하는 경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7. 1. 5.>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본인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인)가 65세 이상으로 서울

특별시에 주민 등록을 두고 계속 1개월 이상 거주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활보조수당 월 1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7. 1. 5., 2019. 9. 26, 2020.7.16, 2021.9.30, 2021.12.30>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 제9호 내지 제13호
2.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만,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훈예우수당,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및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의 경우에는 생활보조수당과 중복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유족 및 가족 제외)가 65세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에 주민 등록을 두고 계속 1개월 이상 거주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훈예우수당 월 1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7. 1. 5., 2018. 12. 31, 2020.7.16, 2021.9.30, 2021.12.30>

1.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12호, 제13호
2.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및 제3호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제3호

다만, 보훈예우수당 대상자가 다른 조례(자치구 조례는 제외한다)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의 생활보조수당 및 제4항의 보훈예우수당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7. 1. 5.>

제8조(민간의 참여조성)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 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 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 협조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치구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및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 1. 5.>

제10조(서울시보훈정책위원회) ① 시장은 서울시 보훈정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는 보훈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들 중에서 위촉한다.

1. 보훈정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3. 보훈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이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이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3.25]

[중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3.25>]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7. 1. 5.>[제10조에서 이동 <2021.3.25.>]

부칙 <제8254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예우 및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0.4.22, 2012.3.15, 2020.7.16, 2021.12.30>

1. 삭제 <2021.12.30>

2. 삭제 <2021.12.30>

제4조(지원 사업 등)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의 애국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5>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관내 참전기념비·조형물 건립 등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5.14>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7>

제5조(참전명예수당) ① 시장은 제3조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3.28>

② 수당 지급액은 월 10만원으로 한다.<개정 2018.10.4>

③ 수당 지급은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타 시·도 전입자와 주민등록 재등록, 신규등록자는 전입일 또는 등록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지급한다.<개정 2014.1.9, 2020.7.16>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서울지방보훈청장(남부·북부 보훈지청장 포함) 및 자치구청장과 협조하여 확인하고 결정한다.<신설 2014.1.9>

⑤ 그 밖에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절차와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4.1.9>

제6조(수당의 지급중단) 시장은 수당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1. 사망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말소, 타 시·도 전출한 경우

2. 수당 지원대상자가 제3조제1호 및 제2호 해당자로 자격 변동이 확인 된 경우

제7조(수당의 환수)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 반환할 자가 환수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8495호, 2022.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독립유공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순국선열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 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2. 애국지사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제3조(지원사업)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개정 2017.1.5, 2019.3.28, 2019.12.31, 2021.12.30>

1. 생존애국지사에게 월 100만원의 보훈명예수당 지급
2. 애국지사 사망 시 조의금 100만원 지급
3. 3.1절, 광복절 기념일에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위문금 각 10만원 지급(직계후손이 선순위자일 경우 그 사촌이내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4.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 서울시 지정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
5.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월20만원의 생활지원수당 지급
 - 가.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법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
 -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그 밖에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9.12.31>

제4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으로서 서울특별시 관할 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법 적용대상으로 등록된 자로 한다.

제5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훈명예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2.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지급대상자 사망 후 지급된 경우

부칙 <제8255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 수호의 임무를 수행하다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전상·공상 청년 유공자, 재해 부상 청년제대군인 등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건강한 삶과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청년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라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장해"라 함은 「군인재해보상법」 제3조제4호에 따라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3. "제대군인"이라 함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국가 수호의 임무를 수행하다 부상 또는 질병으로 전역[퇴역·면역(免役) 또는 상근 예비역 소집해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을 말한다.
4. "전상 청년유공자"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군인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중 청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공상 청년유공자"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중 청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재해부상 청년제대군인"이라 함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중 청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청년 장해 제대군인 상담센터"라 함은 청년 장해 제대군인 및 청년유공자의 건강한 삶과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설치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국가 수호의 임무를 수행하다 장해를 입은 청년 장해 제대군인 및 청년유공자에게 성별 특성을 고려한 보훈관련 법률지원,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창업·일자리 정보 등을 제공하여 이들이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청년 장해 제대군인 및 청년유공자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청년 장해 제대군인 및 청년유공자 지원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청년 장해 제대군인 및 청년유공자 지원을 위한 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청년 장해 제대군인 및 청년유공자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청년 장해 제대군인 및 청년유공자 지원 관련 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 장해 제대군인 및 청년유공자의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시장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 청년 장해 제대군인 및 청년유공자 당사자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청년 중 군 복무 중 장해를 입은 제대군인

2.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청년 중 군 복무 중 장애로 전역 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사람
3.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청년 중 군 복무 중 장애로 전역 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한 사람
4. 그 밖에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청년 장애 제대군인 및 청년유공자의 원활한 사회진출을 돕는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청년 장애 제대군인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청년 장애 제대군인 및 청년유공자의 건강한 삶과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 장애 제대군인 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상담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훈관련 법률상담 및 행정절차 등 정보제공
2.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3. 취업상담 및 일자리 정보제공 등 지원
4. 보훈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재해부상 청년제대군인 및 청년유공자 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설치한 상담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대행·위탁) ① 시장은 상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6조에서 규정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방법 등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인적정보의 수집·관리 등) ① 시장은 청년 장애 제대군인 및 청년유공자에 대한 지원과 그 인력의 개발·활용을 위하여 인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정보제공자에게 동의 절차를 거쳐서 수집·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적정보의 요청내용, 요청 및 제공의 절차·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8461호, 2022.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